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021. 6.

금 융 위 원 회

1.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안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와 달리,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개정 내용

- 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할 때에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우와 동일하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행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금융회사등의 조치인 위험평가절차는 고객확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전체 고객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법제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위험 고객을 식별해낼 수 있게 됨
- 다만 현행 법문에 따르면 고위험 고객인 경우에만 금융회사등의 위험평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금융회사등의 위험평가는 고객확인 단계에서 전체 고객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게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입법례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은 금융회사등이 고객,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위험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 1)

8. 위험 평가 -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고객별, 국가 및 지역별, 상품/서비스/거래/전달채널별)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입증, 평가 업데이트를 위해 그러한 평가를 문서화하고 권한당국 및 자율규제 기구에 위험평가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의 성격 및 범위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상응해야 한다.
10. 고위험 - 고위험이 확인된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위험의 관리 및 완화를 위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고객확인업무 사항 명확화 (안 제10조의5)

가. 제·개정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687호, 2018.2.27.)을 통해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등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동 조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혼란 초래

나. 제·개정 내용

-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로서 동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해야 하는바, 이 때 대표자의 생년월일까지 확인해야 함

※ 법인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은 기존 시행령 제10조의4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입법례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후략)

4.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안 제10조의20]

가. 제·개정 이유

- 2021.5.28.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개선방안 마련 필요*
- *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 발생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제17113호, 2020.3.24. 공포, 2021.3.25. 시행) 제8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를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
- *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매·교환 하지 않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위험 경감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입법례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